

#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98,286,959	17,948,609
일반회계	518,997,820	15,569,935
특별회계	79,289,139	2,378,674
공기업특별회계	48,372,452	1,451,174
상수도사업	12,585,809	377,574
하수도사업	35,786,643	1,073,599
기타특별회계	30,916,687	927,501
의료급여기금	1,915,071	57,452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111,722	3,35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88,639	2,659
농공지구조성	4,781,704	143,451
중소기업육성자금	5,536,201	166,0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187,406	35,622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11,836	6,35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70,292	5,109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3,057,265	91,718
수질개선관리	5,530,989	165,930
보건진료	1,931,723	57,952
농업발전기금	6,393,839	191,81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173,466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4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